업무방해(業務妨害)

대한민국 형법 제 314 조 중심의 종합 법률분석

Obstruction / Interference with Business under Korean Law

분석 범위

형법 · 형사소송법 · 민법 · 노동법 · 기업법무 · 경제범죄 · 사이버범죄 · 판례 · 비교법 · 기업 대응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기준일: 2026 년 8 월 7 일

※ 본 문서는 일반적 법률정보·연구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전략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Executive Summary — 90 초 핵심 정리

핵심 명제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타인의 계속적 업무가 존재하고, 형법 제 314 조가 정한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또는 컴퓨터 정보처리 장애라는 법정 수단을 사용하여 업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적어도 그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행위자에게 그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쟁점	핵심 결론
보호대상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경제활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1 회적 행위도 계속적 업무의 일환이면 포함될 수 있다.
법정 수단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기망·계략) ③ 위력(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세력) 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애.
결과	제 314 조 제 1 항은 실제 영업중단·손해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으나 구체적 업무방해 위험은 필요하다. 제 2 항은 정보처리 자체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나 최종 업무중단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표현행위	비판·불매·민원·보도·시위 자체는 곧 업무방해가 아니다. 허위성, 기망성, 강제성, 물리적 봉쇄, 반복·규모·시간,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실제 업무위험을 함께 본다.
노동쟁의	파업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업무방해가 아니다. 2011 년 전원합의체 이후 예측 불가능한 전격성,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 등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인지가 핵심이다.
디지털	DDoS·계정탈취·데이터 변조·부정명령·봇 조작은 제 314 조 제 2 항과 정보통신망법이 중첩될 수 있다. 정상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허위예약도 규모·기망구조에 따라 제 1 항 위계가 문제될 수 있다.
민사	형사상 무죄라도 민법 제 750 조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곧 손해액 전부의 자동 인정은 아니다.
기업대응	증거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업무가 어떻게 방해될 위험에 놓였는지를 보여야 한다. CCTV·녹음·전화기록·메일·로그·장애모니터링·매출자료·인력투입·목격자 진술을 시간축으로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실무 질문은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했는가?”가 아니라 “보호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법정 수단이 사용되었으며, 그 수단 때문에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이다.

목차

- 1. 업무와 업무방해의 법적 의미·개념적 기원
- 2. 대한민국 형법 제 314 조의 구조와 보호법익
- 3. 업무(業務)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4. 허위사실 유포·위계(僞計)·위력(威力)
- 5. 행위 유형별 성립·불성립 경계
- 6. 위험범·고의·위법성·책임의 성립 구조
- 7. 관련 범죄와의 비교 및 경합
- 8. 디지털·사이버 업무방해
- 9. 노동분쟁·파업·피케팅·점거
- 10. 표현·집회·불매·언론·공익제보와의 경계
- 11. 민사상 손해배상·가처분·금지청구
- 12. 기업 실무: 행위자 유형별 위험
- 13. 증거 확보와 디지털 증거보전
- 14. 신고·고소·수사·기소·재판과 입증
- 15.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 16. 판례 흐름과 적용범위의 변화
- 17. 미국·일본·독일 비교법
- 18. 11 개 축 통합 분석체계
- 19. 실무 체크리스트

- 20. 주요 법령·판례·공식 출처

1. 업무와 업무방해의 법적 의미·개념적 기원

1.1 "업무(業務, business / work / affairs)"의 법적 의미

일상어에서 업무는 회사에서 하는 일, 직무, 영업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 제 314 조의 "업무"는 더 넓다. 판례는 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영리기업의 영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회의 진행, 학교의 입학·채용·시험 관련 사무, 조합·종중·협회의 계속적 활동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우연히 한 번 하는 사적 행위나 생활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니다. 대법원은 담장공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는 계속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9 도 110). 다만 일회성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계속적인 본래 업무의 한 과정이라면 보호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 도 1589).

1.2 "업무방해(業務妨害)" — 일상어와 형법 개념의 차이

일상적 표현	형법상 업무방해죄
상대의 일을 불편하게 함, 항의로 시간이 지연됨, 매출이 감소함 등 폭넓은 의미	법이 정한 특정 수단과 위험을 갖춘 범죄. 단순 불편·손실만으로는 부족
행위의 수단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또는 컴퓨터 정보처리장애라는 구성요건 수단이 핵심
도덕적 비난과 혼용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구성요건 판단 필요
실제 결과 중심	제 1 항은 실제 중단 없이 구체적 방해 위험만으로도 성립 가능

1.3 개념적·비교법적 기원

한국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신용과 업무에 관한 죄"라는 체계 안에서 허위정보·기망·위력에 의한 사적 업무 침해를 독립 범죄로 다루는 동아시아형 입법구조를 가진다. 일본 형법 제 233 조·제 234 조는 각각 허위풍설·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제 234 조의 2 는 컴퓨터 손괴·허위정보·부정명령 등을 통한 업무방해를 별도로 처벌한다. 한국 형법 제 314 조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지만, 한국 판례는 헌법상 노동 3 권·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거치면서 "위력"과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교화해 왔다.

> **용어 번역 주의**
>
> 영어의 "obstruction/interference with business"는 한국 형법 제 314 조와 1:1 대응하는 미국 연방법상 단일 범죄명이 아니다. 미국은 coercion, extortion, trespass, computer crime, tortious interference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2. 대한민국 형법 제 314 조의 구조와 보호법익

2.1 현행 조문 — 형법 제 314 조

> **형법 제 314 조(업무방해)**
>
> ①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2026. 8. 7. 현재 시행 형법 기준)

제 1 항에서 말하는 "제 313 조의 방법"은 신용훼손죄 조문에 규정된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제 1 항은 실질적으로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 ③ 위력의 세 유형을 포괄한다. 제 2 항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성요건이다.

2.2 보호법익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실무적으로는 타인이 자신의 계속적 업무를 자유롭고 평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보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공무원의 "공무"는 2009 년 전원합의체

이후 원칙적으로 제 314 조의 업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관련 규정의 영역으로 구별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 도 4166 전원합의체).

2.3 행위주체와 객체

요소	정리
행위주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 회사 외부인뿐 아니라 임직원, 주주, 노조간부, 경쟁사 관계자도 가능.
피해자/객체	"사람의 업무".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단체의 업무도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된다.
자기 업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보호한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담당자의 독립적 업무가 "타인의 업무"로 평가되는지, 지시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원칙적으로 제 314 조의 업무에서 제외.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위탁 민간인의 업무는 별도 검토.

3. 업무(業務)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1 계속성 — 매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성은 매일·매주 반복된다는 뜻으로 좁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한 본래 업무가 계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회의·면접·채용·시험·공고·현수막 설치 등이 1 회성이라도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하면 업무가 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의견표명을 위한 일회적 현수막 설치처럼 직업·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신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 도 1665).

3.2 사회적 상당성·보호가치와 적법성

업무는 민사상 권리관계가 완벽하게 적법·유효해야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 도 3136; 2023. 2. 2. 선고 2022 도 5940). 예컨대 사법상 점유권원이 다투어지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영업 중인 업무는 정당한 절차 없이 힘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명백히 범죄적이거나 사회질서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활동, 또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업무의 적법성은 절대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모든 위법 업무가 보호된다"는 것은 다른 명제다.

3.3 실제 업무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가

업무방해죄는 현재 손으로 작업하고 있는 순간만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 영업 준비, 예약·채용·심사·고객응대, 서버 운영, 출입관리처럼 계속적 업무를 구성하는 과정도 보호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점에 보호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94 도 3136 판결은 당시 입주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점거농성만 하던 사정을 포함해 보호대상 업무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3.4 공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

> **2009 도 4166 전원합의체**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하여 일반 업무방해죄로 우회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협박 등 별도의 요건을 둔 입법체계를 존중한 것이다. 다만 민간 위탁자, 공무직 근로자 등은 형법상 공무원인지와 업무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한다.

4. 허위사실 유포·위계(僞計)·위력(威力)

4.1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다. 의견·평가·논평은 원칙적으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와 구별된다. 사실과 의견이 섞인 경우에는 문구를 잘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통상적 의미, 증명가능성, 당시 사회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

원 2021. 9. 30. 선고 2021 도 6634 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세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쳐 업무방해 위험이 없다면 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4.2 위계(僞計, fraudulent means / deceptive scheme)

위계는 사람의 착오·부지(모름)를 이용하거나 기망·계략을 써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능적·계획적 수단을 말한다. 핵심은 "힘으로 눌렀는가"가 아니라 "속여서 정상적 판단 구조를 왜곡했는가"이다. 예를 들어 허위 지원서·대리시험·가짜 신분·허위 예약·거짓 신고를 이용해 담당자가 정상절차라고 믿고 처리하게 만드는 유형이 전형적이다.

4.3 위력(威力, force / coercive pressure)

위력은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다수인의 세력, 점거, 봉쇄, 고성·소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압박도 모두 위력은 아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직무상 지시권한·의사결정 관여권한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밝힌 경우,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위력"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2019 도 7446; 2025 도 19191).

구분	위계(僞計)	위력(威力)
핵심 메커니즘	속임수·기망·계략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함	세력·압박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킴
전형적 수단	가짜 신분, 허위 자료, 조작된 신청, 대리응시, 허위예약	폭행·협박, 다수인 봉쇄, 점거, 지속적 소음, 권세·지위에 의한 강한 압박
상대방 심리	착오·부지·오인	공포·압박·의사결정 자유의 제약
물리력 필요	불필요	불필요. 무형적 세력도 가능
판단 포인트	기망 구조와 업무처리의 연결	세력의 정도, 인원, 장소, 시간, 피해자 지위, 행위자 권한

5. 행위 유형별 성립·불성립의 경계

행위 유형	성립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	불성립·보호 영역을 시사하는 사정
단순 거짓말	거짓말만으로 부족. 그 말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기능하고 업무방해 위험을 낳아야 함.	개인적 과장,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거짓은 원칙적으로 부족.
항의·비판	고성·다수 압박·출입 봉쇄 등과 결합해 자유의사를 제압하면 위력 가능.	정당한 권리행사, 사실에 근거한 비판, 통상적 항의는 원칙적으로 위력이 아님.
불매운동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거나 거래처를 협박·강요하여 차단하면 위험.	소비자에게 사실·의견을 알리고 자발적 구매거부를 호소하는 것은 표현·결사의 자유 영역.
시위·피케팅	장시간 출입구 완전 봉쇄, 고객·직원 위협, 설비 점거 등은 위력 가능.	평화적 피켓, 인도상 집회, 합리적 소음·거리에서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보호.
파업	전격성·예측불가능성·심대한 혼란 등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이면 위력 가능.	단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음.
민원·진정	허위자료로 반복 민원을 조작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구조라면 위계/위력 쟁점.	권리구제를 위한 선의의 민원·고소·진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
언론보도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업무마비를 겨냥해 유포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음.	취재·검증을 거친 사실보도, 논평·공익보도는 강하게 보호. 명예훼손과도 별도 판단.
온라인 게시물·리뷰	가짜계정·허위 후기·리뷰폭탄·봇을 조직해 거래를 방해하면 위계/컴퓨터 범죄 가능.	실제 경험에 근거한 평가·의견, 사실 적시는 곧 업무방해가 아님.
전화	대량 반복전화로 회선을 점유하거나 협박성 전화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위력 가능.	1 회 또는 합리적 범위의 문의·항의·취재 전화는 원칙적으로 부족.
방문	집단으로 매장을 에워싸 직원·고객 출입을 사실상 막으면 위력 가능.	예약 방문, 통상적 민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문제없음.
점거	사무실·공장·매장 핵심공간을 장악하여 조업·영업을 막으면 위력 가능. 주거침입/퇴거불응도 경합 가능.	부분적·상징적 점거라도 구체적 업무위험이 없는지 별도 판단.
소음	확성기·경적 등을 장시간·근거리에서 사용해 상담·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위력 가능.	집회법상 허용 범위, 짧고 통상적인 소음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음.
협박·폭력	전형적 위력. 협박죄·폭행죄·강요죄와 경합 가능.	위력의 정도가 부족하면 별도 범죄만 성립하거나 모두 불성립 가능.

행위 유형	성립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	불성립·보호 영역을 시사하는 사정
허위예약·노쇼	대량 가짜 예약으로 좌석·객실·인력을 묶고 정상 고객을 차단하면 위계 가능. 자동화로 시스템 장애까지 발생하면 제 2 항도 검토.	실수·일회성 예약취소는 고의·기망성과 위험이 부족.
시스템 공격	DDoS, 부정명령, 데이터삭제·변조, 계정통제 등은 제 314 조 제 2 항 및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영역.	허가된 보안테스트·정상적 사용은 위법성·권한 범위가 핵심.

경계 판단 공식

행위의 명칭보다 "수단 × 강도 × 규모 × 지속시간 × 장소 × 상대방의 지위 × 행위자의 권한 × 진실성 × 업무와의 인과관계 × 헌법상 보호가치"를 함께 본다.

6. 위험범·고의·위법성·책임의 성립 구조

6.1 8 단계 분석모형

단계	검토 질문
1 보호되는 업무	타인의 계속적 사회·경제 활동인지, 보호가치가 있는지 확인
2 방해행위	행위가 단순 불편을 넘어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3 법정 수단	허위사실·위계·위력 또는 컴퓨터 정보처리장애에 해당하는지
4 위험/장애	제 1 항: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 제 2 항: 정보처리장애의 현실적 발생
5 고의	업무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수단·위험을 인식·용인했는지
6 위법성	정당행위, 권리행사, 노동 3 권·표현의 자유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7 책임	책임능력·위법성 인식 가능성 등 일반 책임요건
8 범죄 성립/경합	다른 범죄와의 상상적·실체적 경합을 검토

6.2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제 314 조 제 1 항은 실제로 가게가 문을 닫거나 회사가 매출을 잃어야만 성립하는 결과범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고 반복해 왔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무죄는 아니지만, 단순히 추상적·막연한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 314 조 제 2 항은 더 미묘하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 도 12194 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정보처리장애로 인해 최종적인 업무방해 결과까지 현실화될 필요는 없다.

6.3 결과범인가 위험범인가

실무적으로 제 1 항은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학술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인지 구체적 위험범인지 표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근 판례 문언은 적어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상 업무방해 위험의 발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고서·고소장에서는 "업무가 실제 중단되었다"는 주장과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다.

7. 관련 범죄와의 비교 및 경합

범죄	보호법익	주요 수단·요건	주관적 요건	법정형(요약)	업무방해와 관계
업무방해죄 형법 314①	업무를 통한 사회·경제활동	허위사실·위계·위력	업무방해 고의	5 년 이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 벌금	협박·폭행·주거침입 등과 행위가 별개면 실체적 경합, 하나의 행위면 상상적 경합 가능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314②	업무 + 정보처리의 정상성	손괴, 허위정보, 부정명령,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애	장애·업무방해 인식	314① 과 동일	정보통신망법, 재물손괴, 컴퓨터사용사기 등과 중첩 가능

범죄	보호법익	주요 수단·요건	주관적 요건	법정형(요약)	업무방해와 관계
강요죄 324	의사결정·권리행사 자유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제	강요 고의	기본형 5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	업무를 방해하면서 특정 행동까지 강제하면 업무방해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협박죄 283	개인의 의사결정·평온	해악의 고지	협박 고의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등	협박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경합 가능
공갈죄 350	재산 + 의사결정 자유	공갈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불법영득·이익취득 고의	10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돈을 뜯으려 영업을 막는 경우 업무방해와 병존 가능
명예훼손죄 307	사회적 평가·명예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적시 고의	사실 2 년/500 만원, 허위 5 년/1,000 만원 등	허위사실이 동시에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와 경합 가능
모욕죄 311	외부적 명예감정/사회적 평가	공연한 경멸적 표현	모욕 고의	1 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 벌금	모욕만으로 업무방해는 아님. 소란·위력과 결합 시 별도 검토
재물손괴죄 366	재물·문서·전자기록의 효용	손괴·은닉 등 효용 침해	손괴 고의	3 년 이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 벌금	기계·서버·문서를 파괴해 업무도 막으면 경합 가능
주거침입/퇴거불응 319	주거·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침입/불응 고의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점거·봉쇄형 업무방해와 자주 결합
사기죄 347	재산권	기망 → 처분행위 → 재산취득	편취 고의	2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 (2026 현행)	기망으로 돈을 취득하면서 업무도 방해한 경우 행위구조에 따라 경합
업무상배임 355②·356	본인의 재산상 이익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 위배로 이익 취득·손해 발생	배임 고의	10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	회사 내부자의 방해행위가 재산상 배임까지 갖추면 별도 성립 가능
폭행죄 260	신체의 안전·평온	신체에 대한 유형력	폭행 고의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등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경합 가능
정보통신망법 48·71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신뢰	무권한 침입, 망장애, 인증우회 등	유형별 고의·목적	침입·망장애 등 주요 유형: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세부 조항별 상이)	314② 와 보호법익·요건이 달라 중첩 적용 가능
노동조합법 위반	적법한 노사관계·쟁의질서	폭력·파괴·주요시설 점거, 조업방해 방식 등	규정별 고의	제 89 조 등 개별 벌칙	정당행위이면 형법 20 조 적용. 불법 쟁의가 곧 자동으로 314 성립하는 것은 아님

경합(競合) 주의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죄수관계와 처벌은 행위의 동일성, 보호법익, 시간·장소·의사결정의 단일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업무방해 + 다른 죄 = 무조건 형량 합산”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8. 디지털·사이버 업무방해

8.1 전통적 업무방해와 제 314 조 제 2 항의 차이

구분	제 314 조 제 1 항	제 314 조 제 2 항
수단	허위사실·위계·위력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손괴, 허위정보, 부정명령, 기타 방법
핵심 매개	사람의 판단·의사 또는 물리적 업무환경	컴퓨터·서버·데이터·알고리즘·정보처리
필요 결과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이면 족함	정보처리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함
최종 업무중단	불필요	불필요(정보처리장애는 필요)

구분	제 314 조 제 1 항	제 314 조 제 2 항
대표 사례	허위예약, 가짜지원, 점거, 압박	DDoS, 관리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봇에 의한 통계·순위 시스템 조작

8.2 유형별 분석

유형	법적 포인트
DDoS 공격	대량 트래픽으로 서버·망이 정상 응답하지 못하면 제 314② 의 정보처리장애 및 정보통신망법 제 48③ 이 핵심. 실제 장애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로그·트래픽 그래프로 입증.
악성코드/랜섬웨어	파일 암호화·서비스 중단·백도어 등으로 정보처리장애가 발생하면 314②. 악성 프로그램 전달·유포 자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규율도 별도 검토.
계정탈취·비밀번호 변경	관리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 ID·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후임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게 한 사건에서 314② 성립 인정(대법원 2006. 3. 10. 2005 도 382).
대량 허위예약	정상 예약 UI 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이용 의사 없음"을 숨긴 채 대량예약으로 좌석·객실·인력을 묶으면 제 1 항 위계가 우선 검토된다. 봇이 시스템 처리능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 2 항도 가능.
매크로·봇	자동화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허위정보·부정명령에 해당하고 시스템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작동하는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드루킹 사건은 댓글순위 통계 집계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죄.
검색순위/시청자수 조작	2020 도 15674 는 프로그램 유형별로 다르게 판단했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만으로 314② 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정보처리 장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삭제·변조	전자기록 손괴·변조로 업무 처리나 복구에 장애가 생기면 314② 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이 중첩될 수 있음.
이메일 폭탄·폼 스팸	메일서버·CRM·고객응대 시스템의 처리기능이 실제로 저하·마비되면 314② 가능. 단순 다량 메일 수신만으로는 장애 정도를 입증해야 함.
결제 시스템 교란	승인요청 폭주, 부정 API 호출, 데이터변조로 결제 정상처리가 안 되면 314②.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있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도 검토.
SNS·플랫폼 신고 테러	허위 신고를 조직적으로 제출해 계정·상점이 자동 정지되도록 유도했다면 위계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정한 정보 입력 쟁점. 플랫폼 설계와 실제 처리 결과가 중요.

8.3 디지털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원본 로그: WAF/CDN, 서버 access/error log, DB audit log, authentication log, cloud audit trail
- 타임존 통일: KST/UTC 혼재로 사건 시각이 어긋나지 않도록 수집 시 기준을 기록
- 무결성: 해시값(SHA-256 등), 원본 이미지/스냅샷, 보관자·전달자 기록(chain of custody)
- 장애 지표: latency, error rate, CPU/memory, queue depth, failed transactions, availability
- 비교 기준: 정상일 동시간대 트래픽·예약·전화량과 사건일을 비교하면 "구체적 위험/장애" 입증력이 커진다.

9. 노동분쟁·파업·피케팅·점거

9.1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출발점

헌법 제 33 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형법 해석의 중요한 배경이다. 노동조합법 제 4 조는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형법 제 20 조의 정당행위가 적용됨을 명시하되, 폭력·파괴행위는 정당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 2026. 3. 10.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책임비율 개별화 등 민사책임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9.2 2011 년 전원합의체 — 파업과 "위력"의 재정립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 도 482 전원합의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9.3 피케팅·점거·출입방해

평화적 피케팅과 설득은 노동 3 권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 38 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자의 출입·조업·정상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폭행·협박을 통한 참가 호소·설득을 금지한다. 제 37 조 제 3 항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를 금지하며, 제 42 조는 폭력·파괴 및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를 제한한다.

행위	형사상 평가의 핵심
파업	단순 노무제공 거부인지, 전격성·예측가능성·혼란 규모·필수유지업무·절차 위반 등을 종합
피케팅	설득 중심인지, 출입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거나 위협했는지
사업장 점거	부분·병존적 점거인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장악했는지
대체인력 출입 저지	평화적 호소인지, 물리적 차단·폭행·협박인지
확성기·집단구호	시간·장소·강도·업무 특성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정상업무가 위험에 빠졌는지

9.4 2026 년 노동조합법 제 3 조 — 민사책임과의 연결

2026 년 시행 개정법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노조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행위 및 근로자별 책임비율 판단 등 추가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은 과거보다 더 세분화된 적법성·개별책임 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폭력·파괴 등 위법행위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0. 표현·집회·불매·언론·공익제보와의 경계

10.1 형법은 “불편한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기업이나 기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 민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는 공적 관심사와 대립적 의견표명의 경우 특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0.2 2025 년 전쟁 반대 표현행위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 도 16921 은 전쟁 반대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여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표현행위가 상대방에게 불편과 추가 대응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3 2025 년 현수막 판결 — “표현 자체”를 업무로 볼 때의 제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 도 1665 는 단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계속적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경우에는 업무가 될 수 있다. 특히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의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10.4 불매·리뷰·보도·공익제보 판단표

영역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쪽	업무방해 위험이 커지는 쪽
불매운동	사실·의견을 토대로 자발적 불매를 호소	허위사실, 거래처 협박, 고객 출입 물리 차단
온라인 리뷰	실제 이용경험·주관적 평가·과장되지 않은 사실	가짜계정, 허위경험, 조직적 리뷰조작, 봇·대량 신고
언론취재/보도	공익 목적의 취재·검증·논평	허위자료 조작, 취재를 가장한 반복적 업무마비, 협박
공익제보	위법·위험 사실을 적법한 채널로 알림	알면서 허위 내용을 조작하거나 업무마비 자체를 목적으로 수단 남용

영역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쪽	업무방해 위험이 커지는 쪽
민원·고소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 기반 신고	허위증거·동일 내용 대량 자동제출로 업무기능을 교란

11. 민사상 손해배상·가처분·금지청구

11.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트랙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법 제 314 조의 엄격한 "허위사실·위계·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되더라도, 행위가 민사상 위법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상 손해액의 범위, 일실이익의 개연성,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 등은 별도로 다투어진다.

11.2 손해 항목

손해 항목	입증 자료
직접 영업손실	POS·매출전표·예약취소·환불·거래중단 내역
일실이익	과거 매출 추세, 동일요일/계절 비교, 고객수·전환율, 계약 확정 가능성
추가 비용	대체인력, 경비, 서버증설, 포렌식, 복구비, 임시사무실 비용
신용·명예 손해	언론·SNS 확산자료, 거래처 문의, 신용조건 변화, 계약해지 사유
비재산 손해	개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등 민법 제 751 조 요건
장래 손해	계약해지·고객이탈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지속될 경우 제한적으로 주장

11.3 가처분·금지청구

반복되는 출입방해, 허위표시, 특정 시스템 접근, 영업장 점거 등은 본안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업무방해금지·접근금지·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등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 여부, 금지범위의 특정성을 본다. "일체의 비판을 금지한다"는 식의 포괄적 청구는 과도하다고 평가될 위험이 높다.

12. 기업 실무: 행위자 유형별 대표 위험

행위자	대표 유형	핵심 증거·쟁점
경쟁기업	허위 품질·안전정보 유포, 거래처에 허위자료 제공, 입찰·영업현장 방해	허위성·배포경로·경쟁관계·고객 이탈의 연결
전직 직원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데이터 삭제·반출, 고객·공급망 시스템 교란	권한 종료 시점, 접근기록, 퇴직 통보, 계정 권한
해고된 직원	사업장 점거, 반복 방문·전화, 내부시스템 접근, 고객 접촉	출입권한 취소, 퇴거요구, 경고문, 로그
협력업체	납품·운영 중단을 지렛대로 한 압박, 시스템 계정 통제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사회통념상 수단이 허용되는지
고객	악성민원·폭언·대량전화·허위예약·리뷰조작	정당한 소비자권리행사와 반복·기망·위력의 경계
주주	회계자료 열람 요구, 주총 항의, 경영진 압박	법률·정관상 권리 범위, 행사 방식의 상당성 — 2021 도 3805 참고
노동조합	파업·피케팅·점거·출입저지	노동 3 권, 노조법 절차·수단, 전격성·혼란 정도
시위대/시민단체	불매캠페인, 현수막, 확성기, 출입구 집회	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물리적 봉쇄 여부
온라인 이용자	허위리뷰, 대량 신고, 봇·매크로, 계정탈취	진실성, 자동화, 시스템 장애, 플랫폼 약관·권한

12.1 기업의 "첫 24 시간" 대응 원칙

- 안전과 서비스 연속성 우선: 사람의 안전 → 핵심 시스템 격리 → 대체 프로세스 가동 순서.

- 증거보전 명령(Legal Hold): 관련 CCTV·메일·메신저·서버로그·출입기록의 자동삭제를 즉시 중지.
- 원본과 분석본 분리: 원본은 읽기전용으로 보존하고 분석은 복제본에서 실시.
- 사실·추정·의견 분리: 사내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 "추정", "법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
- 손해액의 실시간 기록: 장애시간, 취소건수, 직원 투입시간, 외부복구비를 사건 당일부터 누적.
- 대외 커뮤니케이션 통제: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 단정이나 과장된 손해 발표는 명예훼손·증거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음.

13. 증거 확보와 디지털 증거보전

증거	무엇을 입증하는가	보전 포인트
CCTV·사진·영상	행위자의 위치·인원·동선·봉쇄 정도·피해자 반응	원본 DVR/NVR 추출, 촬영시각 오차 기록, 원본 보존
녹음·전화기록	발언 내용, 반복횟수, 협박·기망·지시관계	합법적 수집 여부 확인, 원본 파일·메타데이터 보관
이메일·메신저	사전계획, 고의, 역할분담, 허위정보 출처	원본 .eml/export, 서버 보존, 첨부파일 해시
서버·네트워크 로그	접속 IP, 계정, 명령, DDoS, 장애발생 시점	NTP/타임존 기록, 보관정책 중지, 포렌식 이미지
출입기록	침입·퇴거요구·점거 시간	카드리더·경비일지·방문예약과 CCTV 대조
계약서·정관·규정	행위자의 권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최신본과 사건 당시 효력본을 구분
매출·예약·콜로그	실제 손해와 위험의 객관화	정상기간 비교자료와 함께 보관
장애 모니터링	정보처리장애의 현실적 발생	APM, uptime, error rate, queue, CPU, DB lock, CDN 기록
목격자 진술	자유의사 제압 정도, 실제 혼란, 현장 맥락	초기 메모와 정식 진술 분리, 유도질문 피하기
경고·퇴거요구 기록	상대방이 권한·요구를 알고도 계속했는지	내용증명, 이메일, 녹음, 문자, 현장 표지

13.1 증거보전의 기술적 체크

- 파일명 변경보다 원본 해시값을 먼저 산출하고, 누가 언제 어떤 장치에서 추출했는지 기록한다.
- 클라우드 로그는 보존기간이 짧은 서비스가 있으므로 retention 을 즉시 연장하거나 export 한다.
- CCTV 는 자동 덮어쓰기 전에 원본 포맷과 플레이어를 함께 확보한다.
- SNS·웹페이지는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URL, 게시시각, 계정정보, HTML/PDF 저장 등 맥락을 함께 남긴다.
- 회사 내부조사와 수사기관 제출본 사이에 편집·압축·재인코딩이 발생하면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14. 신고·고소·수사·기소·재판과 입증

14.1 2026 년 8 월 현재의 일반 절차

단계	일반적 흐름
1 신고·고소	112 신고, 경찰서 고소·진정, 사건에 따라 검찰·특별수사기관 접촉.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
2 경찰수사	고소인·참고인·피의자 조사, CCTV·로그·휴대폰·계좌·서버 등 증거수집.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 가능.
3 송치 후 검찰	기록검토, 보완수사 요구/직접 보완수사 범위 내 수사, 기소·불기소 결정.
4 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사건의 중대성·증거·전과·피해회복 등이 고려될 수 있음.
5 재판	검사가 구성요건·고의·위법성 부재 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함. 피고인은 반대증거·법리 주장을 제출.
6 상소	1 심 → 항소심 → 상고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

2026 년 제도변경 예정

2026 년 8 월 7 일 현재는 기존 검찰청 체계가 작동 중이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

련 제도는 2026 년 10 월 2 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10 월 이후 사건은 최신 형사절차·기관 관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14.2 입증책임 — 고소인과 검사의 역할을 구별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성립을 증명할 법적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고소인이 법률상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건의 구조가 명확해진다. 특히 업무방해는 "불쾌한 행동"과 "형법상 위험" 사이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방해된 업무의 정체와 위험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단순 민사분쟁·노사분쟁·표현행위로 보일 수 있다.

14.3 고소인이 주장·정리해야 할 사실

- 보호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회사 전체가 아니라 "예약접수, 채용심사, 매장영업, 서버운영"처럼 구체화.
- 행위자의 구체적 행동: 시간·장소·횟수·인원·발언·접속기록.
- 법정 수단: 허위사실인지, 위계인지, 위력인지, 컴퓨터 정보처리장애인지.
- 업무방해 위험 또는 장애: 어떤 직원·시스템·고객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 고의의 정황: 사전 경고, 내부 대화, 반복, 우회, 삭제·은폐, 목적 진술.
- 손해와 별개로 위험을 설명: 손해액이 0 원이어도 형사 성립 가능하므로 "위험" 자료를 제출.

14.4 피의자·피고인의 대표적 방어논리

방어 축	핵심 주장
업무 부존재	해당 행위가 계속적 업무가 아니라 일회적 개인행위였다는 주장
보호가치 부족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활동이라는 주장
허위성 부정	핵심 사실은 진실이고 일부 과장·세부오류일 뿐이라는 주장
의견·논평	사실 적시가 아니라 평가·의견이라는 주장
위계 부정	상대방이 속지 않았거나 기망·계략이 아니라 공개적 주장·협상이라는 주장
위력 부정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아니며, 지위·권한 내 의견제시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
위험 부정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제 314② 장애 부정	시스템은 사용목적대로 정상 작동했고 처리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고의 부정	업무방해 위험을 인식·용인하지 않았거나 실수·오해였다는 주장
정당행위	노동 3 권, 표현의 자유, 정당한 권한·자력구제가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 범위라는 주장

15.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 도 3136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백화점 입주상인 영업과 단전 등의 조치가 문제됨.	업무의 적법성·보호가치 및 당시 실제 보호되는 업무 존재 여부.	업무의 기초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해당 시점에 영업이 없었던 사정도 판단.	"업무의 적법성"과 "보호가치"를 분리해 보는 대표 판례.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 도 1589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의사진행을 집단으로 방해.	1 회적 회의 진행이 업무인지, 위력의 의미.	계속적 종중 업무의 일환이면 1 회적 회의진행도 업무.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며 실제 제압까지 필요 없음.	비영리·비경제적 사회활동도 업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화.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 도 382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전보된 전직 웹서버 관리자가 관리자 ID·비밀번호를 무단 변경.	부정한 명령과 정보처리장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후임자의 운영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킨 것은 314② 성립.	내부자·퇴직자 계정통제 사건의 기본 판례.

4.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 도 4166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 수행을 방해.	공무가 314 조 “업무”에 포함되는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일반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종전 법리 변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체계적 경계 설정.

5.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 도 482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 중단과 큰 손해 발생.	파업이 언제 위력인가.	파업이 언제나 위력은 아니며, 예측불가능한 전격성·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 등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일 때 위력. 구체 사건은 다수의견이 유죄 유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크게 제한한 전환점.

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 도 12194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포털 댓글 공감/비공감을 대량 조작.	허위정보·부정명령, 정보처리장애의 의미.	통계집계 시스템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작동하도록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314② 유죄. 정보처리장애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최종 업무방해 결과는 불필요.	봇·매크로·알고리즘 조작 사건의 핵심 판례.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 도 15674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검색 상위노출 프로그램과 인터넷방송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	자동화 조작이 곧 314② 인지.	프로그램 유형별로 정보처리장애가 실제 발생했는지 구별.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유지.	“조작=무조건 컴퓨터 업무방해”가 아니라 시스템 기능 장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 도 3805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회계자료 열람권자가 자료를 요구하며 다소 언성을 높임.	정당한 권리행사와 위력의 경계.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수단·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 불가능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위력으로 보기 어려움.	주주·조합원·계약당사자의 권리행사 사건에서 중요.

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 도 6634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노조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된 게시글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 포함.	허위사실과 의견의 구별, 일부 오류의 의미.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세부 차이·과장 정도로 업무방해 위험이 없으면 불성립.	온라인 게시글·보도·캠페인에서 전체 문맥 판단을 강조.

1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 도 16473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은행 임직원이 공개채용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	채용업무의 공정성 침해와 업무방해.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일부 유죄를 확정.	채용비리에서 담당자의 정상적 심사·의사결정이 보호대상임을 확인.

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 도 5940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점유 권원이 다투어지는 건물의 현 관리자를 다수인이 폭력적으로 축출.	위법·무권원 점유와 업무 보호.	업무는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가 없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됨.	민사상 권리자도 절차를 무시한 실력행사로 타인의 사실상 업무를 침해하면 형사책임 가능.

1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 도 7446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고교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특정 학생 합격 취지의 발언.	상급자의 지위·발언이 위력인지, 위험이 발생했는지.	지시·의견관여 권한이 있는 지위와 발언 맥락을 고려하여 위력 및 구체적 위험을 부정, 파기환송.	조직 내부 지시와 위력의 경계를 좁힌 판례.

13.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 도 16921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전쟁 반대의 공적 관심사 관련 표현행위.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의 위력.	공적 관심사 표현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때 위력의 정도와 표현의 자유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 제시.	시위·시민행동·공익 캠페인에 중요한 최신 판례.

14.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 도 1665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재개발 관련 대립관계에서 현수막 철거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문제.	현수막을 통한 의사표현이 “업무”인지.	단순 일회적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니며, 본래 계속적 업무의 일환인지 구체적으로 판단. 대립적 의견표현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함.	“업무” 개념 자체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제한한 최신 흐름.

15.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 도 19191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핵심 법리	실무적 의미
항공사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임원들의 채용 추천·합격 지시.	조직 내 영향력과 “위력”, 실제 방해 위험.	일부를 제외하고 단순 합격지시·추천만으로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및 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	2026 년 최신 판례로, 지위 자체와 형법상 위력을 동일시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

16. 판례 흐름과 적용범위의 변화

시기	주요 경향	대표 판례
1990 년대	업무의 계속성·비경제성·보호가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위력 개념을 정립.	94 도 3136, 95 도 1589
2000 년대	공무와 사적 업무의 체계적 구별, 디지털 업무방해 등장.	2005 도 382, 2009 도 4166

시기	주요 경향	대표 판례
2010 년대 초	파업을 당연한 위력으로 보던 관행을 제한. 전격성·심대한 혼란 등 구체요건 강조.	2007 도 482 전원합의체
2020~2022	플랫폼 알고리즘·봇 조작, 권리행사, 허위정보 전체 문맥 등 디지털·표현 문제 정교화.	2019 도 12194, 2020 도 15674, 2021 도 3805, 2021 도 6634
2023~2026	"위력"을 지위·영향력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고, 표현 행위·업무 개념 자체에 비례성·신중성 강화.	2019 도 7446, 2024 도 16921, 2022 도 1665, 2025 도 19191

전체적인 방향은 "업무방해죄의 외연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침해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파업·권리행사·공적 표현·조직 내부의 정상적 지시까지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의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쪽으로 정교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 미국·일본·독일 비교법

국가	주요 규정	핵심 구조	한국과의 비교
대한민국	형법 314①·②	허위사실/위계/위력 + 컴퓨터 정보처리장애	사적 업무방해를 하나의 일반범죄로 폭넓게 포착. 판례가 노동·표현 영역에서 제한적 해석 발전.
일본	형법 233, 234, 234-2	허위풍설·위계, 위력, 전자계산기 손괴 등	한국과 구조가 매우 유사. 컴퓨터 업무방해는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 벌금, 미수 처벌 규정 존재.
미국	연방 단일 일반죄 없음. CFAA 18 USC 1030, Hobbs Act 18 USC 1951, 주법상 trespass/coercion 및 tortious interference	무권한 컴퓨터 접근·손해, 강도·공갈에 의한 commerce 방해, 민사상 계약·경제관계 간섭	한국처럼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포괄적 연방 일반죄보다 개별 행위·보호법익별로 분산.
독일	StGB §240 Nötigung, §123 Hausfriedensbruch, §303b Computersabotage 등	강요, 건조물 침입, 중대한 데이터처리 방해	업무방해라는 단일 포괄죄보다 강요·침입·컴퓨터사보타주 등 개별 구성요건 중심. §303b 는 타인의 중요한 데이터처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17.1 한국의 국제적 특징

- 사람의 "업무" 자체를 보호하는 포괄적 형사구성요건이 존재해 적용범위가 넓다.
- 허위정보·기망·무형적 압박·물리력까지 제 314 조 제 1 항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
- 컴퓨터 업무방해를 별도 항으로 규정하지만, 정보통신망법과 중첩되는 다층 구조를 가진다.
- 그만큼 파업·집회·언론·소비자운동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이 위력·업무·위험을 제한적으로 다듬어 왔다.
- 미국은 민사상 tortious interference 가 중요한 반면, 한국은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기업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갖는다.

18. 11 개 축 통합 분석체계

축	통합 판단
① 핵심 개념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계속적 업무에 대한 형법상 특정 수단의 간섭
② 형사상 구성요건	업무 + 허위사실/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장애 + 위험/장애 + 고의
③ 위계 vs 위력	속임수로 판단구조 왜곡 vs 세력으로 자유의사 제압
④ 업무의 범위	직업·사회적 지위 + 계속성 + 보호가치; 1 회 행위도 본래업무 일환이면 가능
⑤ 성립/불성립 경계	행위 명칭이 아니라 수단·강도·맥락·권한·위험을 종합
⑥ 표현·집회·노동권	형법을 기본권 행사에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비례적·신중한 해석
⑦ 디지털·사이버	314② 는 정보처리장애의 현실적 발생이 핵심; 망법·재물손괴·사기 등 중첩
⑧ 민사책임	형사 무죄여도 750 조 불법행위 가능. 손해·인과관계 별도 입증
⑨ 증거	행위 증거 + 업무의 실체 + 방해 위험/장애 + 고의 + 손해를 시간축으로 결합

축	통합 판단
⑩ 주요 판례	2009 공무 제외, 2011 파업 제한, 2020 플랫폼 조작, 2023 위력 제한, 2025~26 표현·업무·지위 제한
⑪ 기업 전략	초동 안전·서비스 연속성 → legal hold → 사실분류 → 손해기록 → 형사·민사·노무·PR 병행

실무용 단일 질문

"이 사건에서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업무는 무엇이며, 상대방은 어떤 법정 수단으로 그 업무의 의사결정·물리환경·정보처리를 왜곡했고, 그 결과 어떤 구체적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했는가?" — 이 질문에 증거로 답할 수 있으면 사건의 골격이 잡힌다.

19. 실무 체크리스트

19.1 고소인·기업 체크리스트

☐ 피해 "업무"를 한 문장으로 특정했다.
☐ 사건 타임라인을 분 단위/시간 단위로 정리했다.
☐ 허위사실·위계·위력·컴퓨터장애 중 어느 수단인지 분류했다.
☐ 실제 중단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방해 위험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
☐ 시스템 사건이면 정보처리장애 자체의 객관적 지표가 있다.
☐ 행위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전대화·반복·경고후 지속 증거가 있다.
☐ 정당한 권리행사·표현·노동행위라는 반론을 예상해 검토했다.
☐ 원본증거·해시·보관자 기록을 유지했다.
☐ 손해액 산정에 정상기간 비교자료를 사용했다.
☐ 명예훼손·주거침입·강요·협박·재물손괴·망법 등 경합 가능성을 분리했다.

19.2 피의자·피고인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계속적 업무인지 확인했다.
☐ 자신의 권한·계약·정관·노조법상 권리의 범위를 문서로 확보했다.
☐ 문제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전체 문맥을 보존했다.
☐ 위력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의 인원·시간·거리·실제 반응을 객관화했다.
☐ 업무가 정상 진행되었거나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 컴퓨터 사건이면 시스템이 정상기능을 했는지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 사후 삭제·변경으로 증거인멸 의심을 만들지 않도록 보존조치를 취했다.
☐ 민사·노무·형사 사건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했다.

20. 주요 법령·판례·공식 출처

아래 출처는 본 보고서의 최신성·판례번호 확인에 사용한 주요 공식 또는 준공식 자료다. 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과 부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대한민국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형법 제 314 조 업무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70027
- 민법 제 750 조 불법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750
-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63089
- 정보통신망법 제 71 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56889
- 노동조합법 제 3 조·제 4 조·제 37 조·제 38 조·제 42 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대법원 2011. 3. 17. 2007 도 482 전원합의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F%84482
• 대법원 2020. 2. 13. 2019 도 12194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97
• 대법원 2023. 3. 30. 2019 도 7446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443
• 대법원 2025. 9. 11. 2022 도 1665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95
• 대법원 2026. 6. 25. 2025 도 19191 — 대법원 보도자료 — 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3005
• 일본 형법 Articles 233, 234, 234-2 — Japanese Law Translation —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3581/en
• 미국 18 U.S.C. §1030 (CFAA) — Cornell LII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030
• 미국 18 U.S.C. §1951 (Hobbs Act) — Cornell LII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951
• 독일 StGB §303b Computersabotage —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303b.html
• 독일 StGB §240 Nötigung —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40.html
• 독일 StGB §123 Hausfriedensbruch —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123.html

법률정보의 성격과 사용상 주의

1)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달라질 수 있다. 2)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특정 압박이 “위력”인지 여부는 문맥·관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3) 기업 내부 분쟁, 노동쟁의, 사이버사건은 형사법 외에 민사·노동·개인정보·전자금융·부정경쟁·계약법 규율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4) 2026 년 하반기에는 형사사법기관 개편 및 정보통신망법 추가 시행 예정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을 재검증해야 한다.

업무방해(業務妨害) 종합 법률분석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2026. 8. 7.